

고 발 장

고 발 인 1. 양홍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대전시 중구 중앙로 122, 17(대일빌딩3층)

피고발인 1. 김 중 경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111 한국원자력연구원

2. 성 계 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6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고 발 취 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발하오니 엄중히 수사하여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I. 고발인 및 피고발인의 지위

가. 고발인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의 활동가들로 이 사건 방사성콘크리트 불법매립, 방사능오염수의 우수관 방류 등 무단 방출시에 초래될 환경재앙, 방사능 오염을 우려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핵연료공장이 있는 대전이 탈핵의 중심도시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핵재처리와 고속로 실험과 핵드라이브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나.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원자력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학술의 진보, 에너지 확보 및 원자력의 이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고발인1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콘크리트 불법매립, 방사능오염수의 우수관 방류 등 방사성폐기물의 무단 방출 당시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장이었습니다.

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상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2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콘크리트 불법매립, 방사능오염수의 우수관 방류 등 무단 방출 당시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장이었습니다.

Ⅱ. 고발 내용

1. 피고발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죄책(원자력안전법 및 형법 위반)

가. 방사성폐기물의 무단폐기

(1)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연구 및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관리함으로써 연구 및 개발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도록 1985년 12월에 준공되었으며, 1991년 3월부터 정상가동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성폐기물을 수집·처리·관리하고 있습니다(증 제1호증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현황).

(2) 방사성폐기물의 분류 및 처분절차

1) 방사성폐기물의 분류

방사성폐기물은 방사능 농도와 발생하는 열을 기준으로 고준위폐기물, 중준위폐기물, 저준위폐기물, 극저준위폐기물 등으로 구분하며, 상태에

따라 기체·액체·고체폐기물로 나눕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증 제2호증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2)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절차

원자력안전법은 방사성폐기물을 그 처분 전에 핵종별 방사능농도에 따라 분류(중저준위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해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 처분토록 다음과 같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제65조 (검사)

① 제6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라 한다)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치·운영,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제64조에 따른 허가기준 및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될 때
2. 제63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

제11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 제16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2조제1항(제

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7조제1항·제47조제1항·제56조제1항·제65조제1항·제75조제1항·제77조제1항 또는 제8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받아야 할 사항을 검사받지 아니하거나 제9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한 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4조 (처분검사)

- ① 법 제65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 건설·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려면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처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이 법 제68조제1항제2호의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먼저 ①중저준위폐기물의 경우, 시설운영자가 처분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처분작업 1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검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분검사 신청서에는 폐기물의 방사선학적, 물리학적 특성 정보와 처분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처분검사를 마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다시 콘크리트 처분용기에 넣어 2차 밀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밀봉된 처분용기는 전용트럭에 실어 경주방폐장으로 옮겨져 영구 처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②자체처분폐기물의 경우, 자체처분을 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 할 때마다 자체처분계획서(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자체처분계획서는 규제기관인 원자

력안전위원회가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자체처분 방법 및 절차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검토결과를 통지받은 원자력관계사업자는 해당 방사성폐기물을 자체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사실

그러나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성폐기물의 분류·처분절차를 따르지 않고 콘크리트, 토양, 오수 등을 무단으로 폐기하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중간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①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을 외부에 매립, ②공룡동 연구로 해체시 발생한 콘크리트·토양 일부를 연구원 내 폐기, ③작업복 세탁수 등 액체방사성 폐기물을 무단 배출, ④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비닐 등의 무단 배출 및 소각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하였습니다(증 제3-1호증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등에 관한 중간조사 결과).

또한 최근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16년 10월 실험 장비 등 불용자산 3천여 개를 고철로 내다 팔면서, 방사선 관리구역의 장비들까지 포함했다는 내부 고발까지 제기되었습니다(증 제4호증 2017.2.14. 대전 MBC뉴스). 방사선 관리구역 장비들은 방사선 수치가 높아 엄격한 검

사와 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고물로 팔아 처리했다면 이 또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것입니다.

방사성 관리구역 내 폐콘크리트가 대량으로 불법 반출됐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되었습니다. 2015년 9월 연구원 내부 건물을 증·개축하면서 폐콘크리트를 외부로 반출하였는데 여기에 일부 연구원 등이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된 폐콘크리트 1톤가량을 뒤섞어 버렸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된 것입니다(증 제4호증 2017.2.14. 대전MBC뉴스). 내부 고발에 따르면 리모델링 공사에서 나온 건설 폐기물(방사능에 노출된 폐콘크리트)을 방사능이 낮다는 이유로 그대로 갖다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방사능 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것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4) 원자력안전법 및 형법 제172조의2 위반

한편 형법 제172조의2에서는 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중간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 폐기물을 불법 매립 등의 방법으로 방출시켰으므로 형법 제172조의2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안전법 제65조, 제117조, 동법 시행령 제104조 및 형법 제172조의2를 모두 위반하였습니다.

나. 허가범위를 위반한 폐기물 용융·소각

(1) 관련 규정

원자력안전법

제45조 (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핵연료물질¹⁾을 사용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발전용원자로설치자·발전용원자로운영자 또는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가 핵연료물질을 그 허가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핵연료주기사업자가 핵연료물질을 그 허가 또는 지정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제53조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① 방사성동위원소²⁾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를 생산·판매·사용(소지·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인 사용 장소의 변경과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1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並科)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 전단·제20조제1항 전단·제30조제1항 전단·제30조의2 제1항 전단·제35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제45조제1항 전단·제53조제1항 전단·제54조제1항·제63조제1항 전단 또는 제78조제1항을 위반하

여 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소지·사업 등 각 해당
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위반 사실

1) 원자력안전법 제45조 제1항 위반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4.9월에 '우라늄'변환시설 해체 폐기물 중 '자
체처분 대상 폐기물'에 대한 용융실험에 대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중간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허가 전부터 우라늄변환시설 해체시 발생한 폐기물(자체처분 대상 폐기물 약 47톤)을 용융하였고(2014.1.~7.),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 용융만 허가받은 시설에서 우라늄변환시설 해체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약 10톤)'로 분류된 금속을 용융하였습니다(2012.11.~2015.12.). 또한 우라늄 용융만 허가받은 시설에서 '세슘과 코발트'로 오염된 공릉동 연구로 해체시 발생한 폐기물(자체처분 대상 폐기물, 약52톤)을 용융한 것입니다(2012.11.~2015.12.)(증 제3-1호증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등에 관한 중간조사 결과, 증 제3-3호증 한국원자력연구원 허가기준 범위 위반한 용융 소각 관련 담당자(내부 제보내용)).

핵연료물질 사용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 1)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3호 “핵연료물질”이란 우라늄·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6호 “방사성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허가를 받지 않았고, 허가범위에 불포함된 폐기물을 무단 용융했기 때문에 동법 제116조제1호에 따라 처벌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원자력안전법 제53조 제1항 위반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0.12월에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에서의 '우라늄 변환시설·공릉동 연구로 해체' 폐기물(자체처분 대상·방사성폐기물 포함) 소각을 허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중간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해체 폐기물 소각만 허가받은 시설에서 장갑·비닐 등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약3.2톤)을 소각하였습니다(2013~2015년)(증 제3-1호증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등에 관한 중간조사 결과, 증 제3-3호증 한국원자력연구원 허가기준 범위 위반한 용융 소각 관련 담당자(내부 제보내용)).

방사선동위원소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해체 폐기물 소각만 허가받은 시설에서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소각했기 때문에 동법 제116조제1호에 따라 처벌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 피고발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죄책(직무유기)

가. 권한의 위탁

행정권한을 위탁한다는 것은 법령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단체 등에 맡기고, 이를 받은 수입자·수탁자가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여러 권한들을 원자력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제111조 (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통제기술원, 안전재단,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5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3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인가·허가 및 지정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2. 제10조제3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9조·제34조·제44조·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제2항 후단, 제4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00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3. 제11조제2호 및 제4호(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제2호 및 제4호(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36조제3호, 제46조제3호, 제50조제1항, 제52조제2항,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59조제1항, 제64조제2호, 제68조제1항, 제72조 및 제79조제2호에 따른 기준(기술기준을 포함한다)의 연구·개발

4. 제16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3항 후단·제6항(제34조 및 제4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56조제1항 본문, 제61조제1항 본문, 제65조제1항, 제75조제1항, 제77조제1항 본문 및 제80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확인·점검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에 의거하여 인허가와 관련된 안전성심사와 여러 검사 및 확인·점검을 원자력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업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안전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원자력안전전문기관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제1항 등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제5조 (원자력안전전문기관)

① 위원회의 감독하에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6조 (사업)

안전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제1항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

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직무유기죄 성립

(1) 관련 규정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원자력안전법

제121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성능검증기관에서 성능검증업무를 하는 자
2. 성능검증관리기관에서 성능검증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3. 제111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원 및 직원

원자력안전법 제121조에 따르면 동법 제111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등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에 따라 위탁받은 직무수행을 유기했다면 형법 제122조를 적용하여 직무유기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직무유기 사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국내 유일의 원자력안전규제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정기적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하여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번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등의 사태가 적발되기 전까지 이를 전혀 몰랐다는 것은 그 직무를 유기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내부 고발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사항을 놓고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거래를 했다는 충격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증 제5호증 2017.2.16. 대전MBC뉴스). 따라서 이는 직무수행의 거부에 해당하거나 직무의 의식적 포기 내지 방임에 이르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3. 결론

대전지역의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 내에 임시 저장되어 있는 방사성 폐기물은 고준위폐기물(3.86톤)과 여러 시설에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중·저준위 폐기물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 내에 저장되어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양은 많지 않으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양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 내의 방사성폐기물은 연구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 아파트단지가 있어 특별히 안전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해체·제염 기술과 사후 관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안전검사를 담당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그 직무를

유기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안전검사 담합의 부당거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피고발인 김종경은 원자력안전법 위반의 죄를, 피고발인 성계용은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발인들의 행위로 인해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부디 철저히 수사하시어 피고발인들에게 엄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증거 방법 각 1부

2017. 3. 14

고발인 양홍모

증 거 방 법

1. 증 제1호증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현황
2. 증 제2호증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3. 증 제3-1호증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등에 관한 중간조사 결과
4. 증 제3-2호증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확인 보도자료
5. 증 제3-3호증 한국원자력연구원 허가기준 범위 위반한 용융 소각 관련 담당자

(내부 제보내용)

6. 증 제4호증 2017.2.14. 대전MBC 뉴스 기사
7. 증 제5호증 2017.2.16. 대전MBC 뉴스 기사

대전지방검찰청 귀중